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이 건 태 · 장 종 태 · 이 주 희
김 기 표 · 정 준 호 · 김 동 아
양 부 남 · 서 영 석 · 안 태 준
한 준 호 · 손 명 수 · 이 연 희
전 용 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,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,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.

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

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, 기능유지, 주민 불편 해소에
기여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관리계획의 수립 특례)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내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다.

1.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내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공공시설일 것
2. 행정기관이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한 경우일 것
3.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한 시설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, 주변 환경·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

을 가진다. 다만, 유효기간 내에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관리계획의 수립 특례)</u> <u>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내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다.</u> <u>1.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내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공공시설일 것</u> <u>2. 행정기관이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한 경우일 것</u> <u>3.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한 시설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, 주변 환경·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</u>